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6고단45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단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검사 김기현(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10.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3: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텔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한 다음 "섹스 한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2: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목록사진
-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같은 죄로 2013. 11. 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9.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달 남짓 만에 재범에 이르렀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파사 이헌숙